

##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1. 03   개정 2007. 03. 01  
개정 2013. 0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8)

제2조(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2. 28)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입학 전형의 부정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2. 대학입학 전형의 주요과정 자체감사
3. 기타 대학입학 전형의 부정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2. 28)

② 위원회는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2. 28)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및 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입학관리실에서 주무한다.

제9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 상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